안산대학교	청렴자문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33
		제정일자	2019.12.24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청렴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부정청탁의 공개
2.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
3.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
4. 그 밖에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해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

② 위원은 교직원과 외부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외부 위원의 자격요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시하는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할 수 있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관한다.

⑥ 위원회의 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연루되었을 경우, 총장은 위원의 위촉을 취소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5조(서기) 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6조(협조요청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유지)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청탁방지담당관이 관장하며,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　　칙

이 규정은 2019 년 12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